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간주자본세제 적용범위 합리화(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 프로젝트 지원 성과

2026년 1월 16일 재정경제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적용되는 간주자본세제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이미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간주자본세제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내국법인과 비교할 때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간주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중첩으로 인한 과세 불확실성을 완화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은 외국은행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가 없는 경우에는 간주자본세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적용 예외 규정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제도 정비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간주자본세제(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와 과소자본세제(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제22조)의 입법 연혁 및 양 제도 간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건은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관계 부처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였습니다. 율촌은 세법 해석과 입법 정책에 대한 전문성, 체계적인 해외 법령 및 국제기준에 대한 리서치 등을 결합하여 설득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외국은행의 국내 현지법인은 과소자본세제만 적용되는 반면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과소자본세제 뿐만 아니라 간주자본세제가 동시에 적용되어 OECD 고정사업장 과세지침의 취지와 상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내국법인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OECD 고정사업장 과세지침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과세기준을 정비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과 연계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조세 불확실성을 완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 Areas

조세

Contact

최규환 공인회계사

02-528-5719
khchoi@yulchon.com

최용환 변호사

02-528-5709
ywchoi@yulchon.com

장재형 세무사

02-528-5392
jhjang@yulchon.com

이창수 세무사

02-528-5871
cslee@yulchon.com

송민수 공인회계사

02-528-5319
mssong@yulchon.com